

<p>2. 제안이유 :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p>○ 위 치 : 강서구 화곡동 776, 781 일대</p> <p>○ 내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변경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17,106㎡) · 용도지구지정 : 도시설계지구(17,106㎡) <p>○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p> <p>○ 주민 의견청취 결과 : 없음.</p> <p>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p> <p>○ 강서구 화곡동 776, 781 일대 17,106㎡의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또 같은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p> <p>○ 이 지역은 강서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목동사거리 생활권 중심지로서, 이 지역을 중심기능으로 육성 발전되도록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안)대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p> <p>※ 이 지역은 강서구와 양천구의 접경지역으로서 양천구 중심지에도 강서구에 대응하는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설계지구의 지정이 요구됨.</p> <p>5. 심사결과</p> <p>보 류</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width: 100px; height: 20px;"> <tr> <td style="width: 50%;">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50%;">78</td> </tr> </table> <p>1. 건 명 :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 지정</p> <p>2. 제안이유 :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도시설계)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p>○ 위 치 : 강서구 내발산동 719, 723, 강서구 화곡동 1006, 1013 일대</p> <p>○ 내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변경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27,059㎡) · 용도지구지정 : 도시설계지구(27,059㎡) 	의안 번호	78	<p>○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p> <p>○ 주민 의견청취 결과 : 없음.</p> <p>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p> <p>○ 강서구 내발산동 719, 723과 화곡동 1006, 1013일대 우장산역 생활권 중심지인 27,059㎡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아울러 같은 지역을 생활권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안)이나,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보면, 우장산 전철역 도로에 따라 장방향으로 준주거지역을 배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 서울시에서 정한 도시계획 변경기준 모델과 맞지 않아 재검토가 요구됨.</p> <p>5. 심사결과</p> <p>보 류</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width: 100px; height: 20px;"> <tr> <td style="width: 50%;">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50%;">79</td> </tr> </table> <p>1. 건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p> <p>2.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p> <p>○ 위 치 : 성북구 성북동 330 일대</p> <p>○ 내 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1,905,818㎡ → 1,928,680㎡(증 22,862㎡) · 도시계획사항 : 전용주거지역, 풍치지구 · 공람공고중 의견접수 : 7건 <p>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p> <p>○ 성북구 성북동 330-1 외 16필지의 토지 22,862㎡를 인접 북악산 자연공원에 편입시켜 현재의 공원면적 1,905,818㎡를 1,928,680㎡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임.</p> <p>○ 공원결정 예정지는 '77.7.9. 북악산자연공원에 편입되었다가 '78.10.20. 공원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으로서 현지 임상으로 보나 자연공원과 인접된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고 서울시의 공원면적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p>○ 이 지역은 일부지형이 대지를 조성하고 지목도 대지로 되어 있고 또 공람공고중</p>	의안 번호	79
의안 번호	78				
의안 번호	79				

<p>공원결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7건이나 접수된 사항으로 서울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공원을 신규로 결정할 시에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p> <p>5. 심사결과 보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85%; text-align: center;">100</td> </tr> </table> <p>1. 건 명 : 금호 제12주택개발량재개발구역 지정 및 풍치지구 일부해제</p> <p>2. 제안이유 : 금호 제12주택개발량재개발구역 지정 및 풍치지구 일부해제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요지 【주택개발량재개발구역 지정】 ○위 치 : 성동구 금호동1가 1470 일대 ○내 용 · 토지현황 : 27,013㎡(국·공유지 3,551㎡, 사유지 23,462㎡) · 건축물 : 187동(유허가 168동, 무허가 19동) · 세대수 : 457세대(가옥주 187세대, 세입자 270세대)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풍치지구, 미관4종지구(일부) · 주민동의율 : 토지(72.6%), 건축물(71.1%) 【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 변경결정】 ○위 치 : 성동구 금호동1가 1470 일대 ○내 용 · 면적 : 530,838㎡→517,338㎡(감 13,500㎡) ·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풍치지구, 미관</p> <p>3. 주요요지 ○주택개발량재개발구역 지정조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5%;">구역명</th> <th style="width: 40%;">위 치</th> <th style="width: 15%;">면적(㎡)</th> <th style="width: 2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오류 제2</td> <td>구로구 오류동 14-50번지 일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12,888</td> <td>신규지정</td> </tr> </tbody> </table>	의안 번호	100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오류 제2	구로구 오류동 14-50번지 일대	12,888	신규지정	<p style="text-align: center;">4종지구(일부)</p> <p>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p> <p>○본 안건은 성동구 금호동1가 1470 일대 국·공유지 3,551㎡와 사유지 23,462㎡등 27,013㎡에 신규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현재의 금호·옥수풍치지구 530,838㎡중 이 재개발구역 예정지역에 저축된 13,500㎡(일부도로변 포함)를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임.</p> <p>○재개발구역 내에는 무허가 건물 등 187동의 건물에 가옥주 187세대와 세입자 270세대 등 457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독서당길 북측에 위치한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경사지대이며 인접지역은 금호 6·8구역 등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음.</p> <p>○이 지역은 도로나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대지도 소형택지로 되어 있어 재건축이 적당치 않아 이 지역의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구역지정(안)에 동의의견이며,</p> <p>○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풍치지구를 해제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풍치지구해제(안)에도 동의의견임.</p> <p>5. 심사결과 보류</p>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p style="text-align: center;">오류제2주택개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p> <p style="text-align: right;">1995. 8. 8 서울특별시장</p> <p>1. 건 명 : 오류제2주택개발량재개발구역 지정</p> <p>2. 제안이유 : 오류제2주택개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p>
의안 번호	100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오류 제2	구로구 오류동 14-50번지 일대	12,888	신규지정								